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도권 외 지역의 박물관·미술관 우대 지원 근거 마련〉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255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수도권 외 지역의 박물관·미술관 우대 지원 근거 마련(안 9조의5 신설) ·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구자근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6. 15.
3.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개인 및 대학이 국립, 공립, 사립 및 대학 박물관·미술관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간 문화 인프라 수준의 격차가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은 문화기반이 취약하여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확충이 상대적으로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한다는 지원 근거가 없어 정책적 유인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립·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문화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III. 검토의견

1. 수도권 외 지역의 박물관 및 미술관 우대 지원 근거 마련 (안 제9조의5 신설)

개정안은 국가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학교·교육기관 또는 민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우대하도록 하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5(박물관·미술관의 건립 지원 등) ① 국가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제14조에 따른 학교나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1)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우대할 수 있다.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현행법 제3조²⁾는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박물관·미술관, 공립박물관·미술관, 사립박물관·미술관 및 대학박물관·미술관으로 구분하고 있음.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과 [별표 2]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³⁾되므로, 건립에 있어서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나 의무적 등록 대상으로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받을 수 있음.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② 미술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182.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272.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 설립 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⁵⁾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을 하게 되면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과 마찬가지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국가는 일반회계 예산을 통하여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학예인력·전문인력 지원 사업,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지역의 공립, 사립, 대학박물관의 우수 전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이를 지역관광과 연계시키는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3년 기준 지역문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문화지수⁷⁾가 유의미

게 등록할 수 있다

제24조(경비 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영 수송 기관에 의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그 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사립 박물관·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설립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면 미리 제20조제1항 각 호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 추진 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협의 기관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6)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세부사업으로 2026년 예산액은 206억 2,100만원임.

한 차이를 보이는 등,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간 문화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또한, 수도권에 설립되어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종사·학예 인력 수의 평균과 소장자료 수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보다 더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수도권 외의 지역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내실있는 운영과 전시의 질에는 한계가 있어 수도권 외의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전국 박물관 평균 지표 현황 >

지 역	박물관 수	1개관 당 평균			
		종사인력 수	학예인력 수	소장자료	연 관람인원
서울	137	25.07	8.88	39,455	135,925
부산	32	13.63	5.09	14,195	84,790
대구	18	11.11	4.17	27,314	73,957
인천	31	10.48	4.19	7,695	87,253
광주	13	15.00	6.23	20,444	98,567
대전	16	8.94	3.19	29,996	43,783
울산	10	9.50	2.60	15,780	71,319
세종	6	5.17	3.17	42,997	50,896
경기	132	9.32	3.58	8,387	58,232
강원	97	7.89	1.74	6,636	59,832
충북	41	7.22	2.39	8,519	33,624
충남	64	12.73	4.47	14,730	118,736
전북	45	13.27	3.51	16,419	80,154

7) 계층화 분석으로 불리는 AHP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방법을 통하여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를 지표로 하고 각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지수로, 수도권(0.292)이 비수도권(-0.118)에 비하여 0.410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냄.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지역문화지수 분석)」, 2025, p.59.

지 역	박물관 수	1개관 당 평균			
		종사인력 수	학예인력 수	소장자료	연 관람인원
전 남	65	9.98	2.78	8,810	58,324
경 북	74	13.80	4.22	14,183	73,244
경 남	76	8.75	2.75	10,629	60,937
제 주	61	14.66	1.80	26,501	147,716
수도권	300	16.63	6.06	22,503	96,711
지 방	618	11.01	3.14	14,286	78,133
총 계	918	12.84	4.09	16,971	84,204

※ 자료 : 「2025 전국 문화기반시설총람」, 2025,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미술관 평균 지표 현황 >

지 역	미술관 수	1개관 당 평균			
		종사인력 수	학예인력 수	소장자료	연 관람인원
서 울	43	13.19	6.42	1,130	182,062
부 산	9	19.67	8.67	530	42,758
대 구	6	17.00	9.17	1,002	118,758
인 천	7	7.29	2.86	1,888	9,777
광 주	14	11.07	4.00	866	17,373
대 전	5	11.80	3.80	885	44,747
울 산	1	21.00	11.00	234	105,941
세 종	-	-	-	-	-
경 기	59	21.41	6.51	835	42,011
강 원	19	6.68	2.95	813	44,502
충 북	11	7.55	3.82	674	40,487
충 남	11	5.27	2.82	646	22,541
전 북	21	6.95	2.48	302	26,863
전 남	41	4.27	1.90	1,349	21,124
경 북	12	5.25	2.17	564	44,944
경 남	10	11.90	4.40	880	29,829
제 주	21	9.57	2.29	444	52,981
수도권	109	17.26	6.24	1,019	95,191
지 방	181	8.21	3.29	796	36,406
총 계	290	11.61	4.40	880	58,501

※ 자료 : 「2025 전국 문화기반시설총람」, 2025,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개정안은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의 실질적인 지역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수도권 외 지역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있어서 국가가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문화인프라와 문화향유 기회 부족으로 인한 수도권 외 지역 주민의 인구유출을 막음으로써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지방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예산에 있어서 지방우대원칙을 적용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더 큰 세제 감면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므로⁸⁾ 개정안은 이러한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에 부합하는 측면의 입법임.

다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 지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안 제9조의5제1항에서 ‘건립’ 부분이 현재의 국가보조금 예산 편성·관리체계와 충돌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안 제9조의5제1항 ‘건립’ 부분의 입법 실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8)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2027년 예산안 홍보자료(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 2026. 9, p. 7.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2026. 8.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 제24조제1항⁹⁾ 후단에 안 제9조의5제2항의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할 경우에도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임으로, 이와 같이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인구감소지역¹⁰⁾ 또는 접경지역¹¹⁾에 해당하여 관련 법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¹²⁾가 있는 만큼,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유사입법례¹³⁾를 참조하여 이들 지방자치단체

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경비 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1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 12)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에 모두 해당, 경기도 가평군 인구감소지역에 해당, 경기도 파주시는 접경지역에 해당.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

들도 우대 지역에 포함되도록 수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건립 지원은 이미 현행법에 근거가 존재하며,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 지원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¹⁴⁾이므로 국가의 재정지원이 불가능한 측면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입법취지와 함께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대할 수 있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련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집경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

1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참고로, 인구감소지역의 박물관·미술관 설립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광규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0305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84
